

## 기술용역 수의계약 전적제출 안내공고



(수의전적-총액 / 적격심사 비대상 / 전자전적제출)

### 1. 전적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용역명 : 강릉시 남대천 좌안 차집관로 복선화사업 GIS DB구축 용역
- 나. 용역현장 : 강릉시 동지역 일원
- 다.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18개월
- 라. 용역내용 : GIS DB구축 용역 1식
- 마. 기초금액 : 금108,740,000원(추정가격 98,854,545원 부가가치세 9,885,455원)

### 2. 입찰(견적)서 제출기간 : 2026. 8. 26.(수) 10:00 ~ 2026. 8. 28.(금) 10:00

- ※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. **입찰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를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**,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### 3. 입찰(견적)서 개찰일시 및 장소

- 가. 일시 : 2026. 8. 28.(금) 11:00
- 나. 장소 :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
  - ※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9조 규정에 의거 **재입찰을 실시**할 수 있으니, **국가중합전자조달시스템 (나라장터)**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4. 입찰(견적) 참가자격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을 업체 중,
- 나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의거 **공공측량업(또는 측지측량업), 지하시설물측량업, 수치지도제작업**을 모두 등록한 업체
- 다.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에 의거 **소프트웨어사업자(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)**로 등록된 업체
- 라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**직접생산확인증명서(세부품명:공간정보DB구축서비스(세부품명번호:8115169901))**를 소지한 업체
- ※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(<https://www.smpp.go.kr>)을 통해 확인이

불가능할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.

- 마. 공고일 전일[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)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]로부터 입찰일까지 **주된 영업소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)의 소재지가 강릉시내 지역인** 업체(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)이어야 하며,
- 바. 본 입찰(견적)은「국가중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의사」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을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- 사.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 **수의계약 배제사유<별표1>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**이어야 합니다.
- 아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**‘조세포탈 등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**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  - ※ 미자격자이면서 입찰(견적)에 참가한 자,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,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,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.

### 5. 입찰(견적)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

- 가. 본 용역은 수의계약, 총액견적(전자),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.
- 나.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± 3%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천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.
- 다. 개찰한 후 예정가격 이하이며 **예정가격의 88%**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- 라.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,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- 마. 국가중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(전자입찰의 예정가격)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천한 예비가격 추천결과에 따라 결정되며,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천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천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- 바.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### 6. 입찰(견적)의 무효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안부 최근예규)」등의 규정에 의합니다.

## 7. 청렴이행각서 제출

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,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

2026년 8월 24일

## 8.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

- 가. 당해 영역 관련 문의처 :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(☎033-640-5984)
- 나.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: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(☎033-640-5484)
- 다.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: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☎1588-0800)
- 라.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(<https://www.mois.go.kr>)의「정책자료」-「법령정보」-「훈령·예규·고시」와 나라장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g2b.go.kr>)의「고객지원」-「법령정보」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## 9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참가자는 공고문, 입찰유의서,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, 영역계약 특수조건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과업이행요청서,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나.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다.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(부가세 제외)의 2.5%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.
- 라.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(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마.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,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,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(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)
- 바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(수익계약 체결 제한)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(3급 이상)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·용역·공사 등의 수익계약(1인수위,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)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.  
※ 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<별표2>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「수익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」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

### 「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」 운영

강릉시 공무원은 금품·향응·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.  
금품·향응·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방법1: 시청 홈페이지([www.gn.go.kr](http://www.gn.go.kr)) 접속 ⇒ 시민참여 ⇒ 신고센터 ⇒ 공직부조리신고
- 방법2: (25522)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청 감사관
- 방법3: 전화신고 (강릉시 감사관: 033-640-5033)

[별표1]

수의계약 배제사유

-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,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
-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)
-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, 담합행위, 입찰·계약 서류의 허위·위조 제출, 입찰·낙찰·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)
-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
  - ※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「낙찰자결정기준」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“4”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,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>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이때 ‘입찰공고일’은 ‘안 내공고일’로 ‘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’은 ‘견적서 제출마감일’로 본다.
-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·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,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, 불법하도급,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-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
  - ※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.
-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  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(법인은 대표자)
  2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(배우자 포함)의 직계 존·비속인 사업자
  3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한 자
  4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(배우자, 직계존·비속)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
  5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
-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
-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
- ⑩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(용역)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(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) 이상인 자. 다만,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 
(단, 제3절의 “1”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)

[별표2]

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1쪽)

|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| 발주기관    | 발주부서 | 발주날짜          |
| 발주자 | 발주내용    |      | [ ] 공사 [ ] 용역 |
|     |         |      | [ ] 물품 [ ] 기타 |
|     | 수의계약 사유 |      |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|
| 계약상대자<br>(확인인) | 성명  | 소속 | [ ] 개인 [ ] 법인 |
|                | 연락처 | 주소 | [ ] 단체 [ ] 기타 |

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①               |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②               |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③               | 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④               | 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⑤               | 상임위원회 위원,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⑥               |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⑦              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⑧              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발주자<br>확인<br>사항 |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⑥까지 중 어느 하나에 “예”를 답변한 경우,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*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(기관·법인·단체명)

계약상대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